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일시 | 2020년 7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황운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정의당)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차

목차	2
프로그램	3
인사말 황운하 의원실	4
인사말 이은주 의원실	6
발제 1	8
‘정보경찰’ 개혁에 관하여	
발제 2	23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	
토론 1	29
토론 2	34
토론 3	37
토론 4	43

프로그램

10:00 사회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10:05 발표1	‘정보경찰’ 개혁에 관하여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10:35 발표2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11:05 지정토론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희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사무장 최종윤 경찰청 정보1과 경정
11:45 종합토론	
12:00 폐회	

인사말



국회의원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 해주신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 경찰개혁네트워크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의 핵심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촛불 시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각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이들 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설치법안과 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경찰개혁과 국가정보원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논의되었던 경찰개혁 방안, 즉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보경찰 폐지 등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의 경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경찰청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야기했던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정보경찰도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해 개혁이 역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속토론회에서 경찰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도 경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회의원 황운하

인사말



국회의원 이은주(정의당)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를 끝으로 세 번에 걸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15일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와 22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두 번의 토론회를 거치며, 경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회·학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경찰권한 분산이란 경찰개혁의 큰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경찰개혁 방안 그대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경우, 시민 다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정보경찰과 보안경찰 문제는 그래서 더 중요하게 논의돼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 직무범위로 규정돼 있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시기 정보경찰이 ‘치안정보’라는 개념상 모호함을 방패삼아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사찰활동을 하고, 노조·시민·사회·선거운동에 개입했던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특히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옴호석씨의 시신 탈취에 정보경찰들이 개입했던 사건은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권한을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큰 고민을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정보경찰 업무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 탐지’하고, ‘알람 기능’을 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 대해서도 김창룡 청장은 “그간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교섭·장례 등에 부적절하게 간여한 것”이라며 단지 정보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생긴 문제,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고 신임 경찰청장 역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정보경찰 문제를 개혁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모쪼록 오늘 자리에서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세 차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을 수렴해 경찰개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회의원 이은주

‘정보경찰’ 개혁에 관하여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1. 개념 정리

가. ‘정보경찰’

‘정보경찰’(情報警察)이란 법령상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니 개념상 혼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정보경찰’, ‘정보활동’ 등에 관한 개념/범위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정보보안과/정보과, 경찰서 정보보안과/정보과(경찰청 정보국으로의 보고체계 하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소속 경찰관을 의미합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도 이런 정도의 의미로 ‘정보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 12. 31. 기준으로 정보경찰 정원은 3,370명으로, 경찰청 131명, 지방청 601명, 경찰서 2,638명이었습니다. 현원 자료는 따로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정원보다 많은 현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¹

¹ 외부에 공개된 정원 외에 파견 등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면 그 필요성, 기간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적법성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정보경찰’이 아닌 경찰관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종합, 분석, 활용 등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서		정보활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및 소년범죄 수사의 기획·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제8조 제5항 제5호
	여성대상범죄수사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 수사의 기획·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제8조 제7항 제1호
수사국	수사기획과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	제9조 제3항 제4호
	형사과	살인·강도·폭력·절도 및 방화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제9조 제5항 제2호, 제4호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수사과	경제·금융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제9조 제6항 제1호, 제2호, 제3호
		공무원·병무·문화재·식품·환경·총기·성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선거·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중대범죄수사과	-	제9조 제4항
	범죄정보과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기획·조정·지도·통제	제9조 제9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제3항
교통국	교통운영과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제9조의3 제5항 제2호, 제3호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보안국	보안관리과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12조 제4항 제2호, 제3호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보안사이버과	사이버공간 내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12조 제6항 제3호
외사국	외사정보과	외사 치안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제12조의2 제4항
		외사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 및 관리	

정보경찰의 ‘정보활동’과 비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정보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①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경찰(情報警察)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04. 12. 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삭제 <2004. 12. 31.> ⑤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⑥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정보경찰 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보경찰의 폐해, 패악에 관해서는 전래되는 이야기가 많고, 이런 정보경찰의 활동을 일제 강점기 고등경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악행으로 인한 불안, 우려, 공포, 분노에는 시효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도개선논의를 함에 있어 수십년전의 잘못(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해서는 적절한 개선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미 해결되었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소진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그동안 정보경찰 개혁의 진전을 막는 기제로 활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조직과 활동이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에 순응·복종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자세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권력의 요구라면 불법·부당한 것이라도 따르는 것이 반복되었고 이것이 정보경찰의 기본 자세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정보경찰의 '불법감수성'은 권력 앞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시절이나 1990년대 사례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덧글 공작'에 정보경찰이 동원된 사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관련한 '정치관여',² '불법사찰'에 정보경찰이 동원된 사례 등 정보경찰의 권력지향성을 보여주는 일이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밝혀진 정치관여 문제를 보면, 박근혜 청와대가 2016년 총선 즈음 친박후보자들에 대한 지역분위기 등 선거판세분석을 정보경찰에 요구했는데 정보경찰은 이것이 명백히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경찰지휘부 일부의 과욕/판단착오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보경찰조직이 동원된 것이었음에도 정보경찰 내부에서의 통제는 물론이고 경찰청 조직 내에서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정치개입이 '어쩌다 발생한' 일탈이 아니라 '어쩌다 들킨' 것이고 경찰조직내에서 이를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권력의 필요를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거나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조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경찰 조직 전반에 만연해 있고, 어떻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혹은 일부 지휘부만 처벌받으니깐 일선 정보경찰은 지휘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존논리)가 횡행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국정원 국내정보파트의 정보보고, 구 기무사의 정보보고 등이 (적법·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과거 정부에서는 주요한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기무사 등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정원 국내정보파트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² 총선에서 친박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을 수집/작성/보고하는데 정보경찰이 관여했는데,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분위기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는 경찰청 정보심의관,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에게 순차 보고되었고 당시 강신명 청장의 지시로 실행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권력(청와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것인데, 이것이 2016년 총선 때였으니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선언’³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의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⁴ 실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밖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부의 핵심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왔다면 정보불균형을 스스로 자처한 셈인데,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으로부터 국내정보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이 불법·부당한 것을 떠나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복수의 정보채널을 만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적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여러 정보기관이 국내정보에 관한 보고를 권력자에게 해왔고, 그래서 ‘정보의 경쟁’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경찰청만 국내정보에 관한 정보활동결과를 청와대(국정상황실), 총리실(국정운영실), 행안부(치안정책관실) 등에 전파하는데, 청와대에는 별도의 정보를 보고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정보의 독점공급으로 인한 정책결정자들의 정보편식 현상이 문재인정부 하에서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편향을 보이거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실제 최근 경찰 관련 정책결정결과(ex. 검경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정보경찰개혁 등)를 보면 정보(공급)독점이 정책결정을 견인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없습니다. 현재 치안사무관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지만(「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가 경찰권 행사에 관하여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의 치안활동을 통제하는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참조).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실에는 현직 경찰관들이 파견근무하고 있어 경찰청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를 통제하는 통로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실정입니다.⁵

³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법령이 존재함에도, 그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대통령령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음) 법령상 존재하는 공무원조직의 직무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개정’해야 하는데, 별로 바꾸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 ‘선언’과 달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⁴ 사실 구 기무사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지 의문인데,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민정수석비서관이 기무사로부터 독대보고를 받았다는 풍문이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정보기구 활용은 베일에 싸여 있고 결국 권력의 ‘선언’이나 ‘주장’을 믿느냐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⁵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와 비교하면, 경찰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에 검사들이 다수 파견근무하면서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부속기관화되었던 경향을 보였으나, 조직상으로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최근 법무부장관의 행보는 이런 조직적 특성, 법무부와 대검찰청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법」상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나, 최근까지도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본관 옆 별관에 위치에 있었고(최근 인근 사무실로 이전함),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과 나머지 5명의 위원을 비상임으로 하고 별도의 사무처도 없는데다 상임위원은 그동안 경찰고위직 출신이 맡으면서 경찰청을 통제하는 기구로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청에 대한 행정부 내 통제시스템이 없고, 결국 국무총리나 청와대에 의한 통제만 남게 되는데, 그동안 국무총리가 경찰권 행사 특히 정보경찰의 활동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전례가 없고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 중에서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경찰은 청와대와 직거래하고 있으니, 청와대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정보경찰이 선별해서 공급하는 정보만 접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찰의 정보 독점공급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독점공급하고 이를 소비하는 관계에서 공급받는 측이 공급하는 측을 통제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정보 ‘수요’는 상수인데, 공급이 독점이니 공급자가 우위에 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봐줘야 경찰과 청와대의 관계는 공생관계이지, 청와대가 경찰을 통제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즉, 정보공급원의 독점은 정보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급이 수요를 통제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게 되었고 그래서 청와대는 정보경찰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경찰이 정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 근무자들이 경찰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데, 정보경찰은 이 비판적 수용가능성⁶마저도 제거해 버릴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농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도 정보독점공급의 부작용일 겁니다.

넷째, 활동방식의 비민주성입니다. 경찰 내에서도 정보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들 합니다. 정보경찰의 비밀주의는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보활동의 성격상 비공개/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⁶ 경찰에 비판적인 인사가 청와대의 주요직책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절차에서 경찰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찰이 자신들 조직에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검증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범여권에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부처의 주요보직을 받을 수 있는 후보군들에게 ‘친경’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강요되거나 ‘반검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좋은 자리로 가게 되는데 도움될 것이다(최소한 손해는 아닐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인사농단’의 폐해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거명하면 안 된다.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방첩활동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은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 정보경찰이 보고한 내용은 ‘72시간 폐기’원칙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보활동의 결과가 축적되지 않고 폐기된다는 것인데, 아직도 믿기지 않는 정보처리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활동의 사후적 통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72시간 폐기’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가 드러나는데, 이것 보면 이 원칙이라는 것이 외부설명용 멘트정도가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3. 정보경찰 개혁의 방향성

정보경찰 개혁에 관하여는 2018. 4.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권고의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선의 방향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의 주요내용은 ①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고,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의 각 기능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할 것, ②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보경찰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할 것, ③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다른 부처로 이관할 것, ④ 집시대응 업무는 경비 등 경찰내 다른 부서로, 신원조사 업무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할 것, ⑤ 개별적 경찰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명시할 것, ⑥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입니다.

이 권고는 정보경찰의 활동근거, 활동범위, 활동방법(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경찰의 다른 기능 수행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전체 경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총량을 줄이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권고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은 현재도 유효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8년 4월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있으니 2020년 7월의 논의는 경찰의 권고불이행을 고려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경찰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개혁위 권고는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 위험성 등의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대체는 새로운 불확정개념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남용의 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정보활동은 각 기능별 정보활동 활성화로 족하고, “정보” 그 자체를 별도의 기능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삭제) 4.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 제3항,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에 따르면, 정보국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되는데, 이에 관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1과	● 정보경찰(情報警察)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보2과	●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정보3과	●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정보4과	●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① 정보1과 업무 중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의 경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제4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신원조사 권한위탁,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 등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진행되는데, 공직후보자·공무원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리하는 DB에서 임용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제공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족합니다. 구체적인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면, 이런 인사검증은 경찰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정보2과 업무 중 “치안정보” 관련 업무의 경우,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모호해 그동안 광범위한 정보활동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반성에 기초해 ‘치안정보’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치안정보 관련 업무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책정보”(SRI포함)의 경우 정책수립·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여론수렴 등 일부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이 정책정보의 수집·작성 등은 ‘경찰’의 치안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또는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등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다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경우 직접 정보수집·작성기능까지 맡게 될 경우 청와대에 상당히 많은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정보종합·분석기능의 일부를 이관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부조직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 정보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직무의 성격상 적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 정보수집·분석기능까지 전부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할 경우 국무조정실 조직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있습니다.

③ 정보3과, 정보4과의 업무는 “치안정보” 수집 및 집시 대응인데, 경찰활동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예방적 위험을 상정한 치안정보 수집은 ‘경찰’의 기능을 넘어서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청의 각 기능별 정보활동만으로도 정보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보활동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회시위대응” 중 채증활동은 최근 경비국으로 이관하였으나 기본적인 집회시위대응업무를 정보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대응은 경비국 본연의 업무이므로 정보국에서 말을 두렀한 이유가 없어 경찰 내에서 기능재조정이 필요합니다.

④ 이외에 정보국 수행업무 중 “대외협력”은 정보3과, 정보4과의 치안정보 수집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대외협력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역시 경찰청 경무기능이

말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각 기능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대외협력담당을 정하면 족합니다.

사실, “정책정보 수집·종합·작성·배포”, “인사검증”, “집회대응”, “대외협력” 이 경찰청 정보국의 업무이고, 이 중 “정책정보”, “인사검증” 관련 기능만 제거하면 사실상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4. 정보경찰 개혁의 방법론

가. 입법

정보경찰 개혁 방법론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입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식 중 대부분이 ‘입법’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거나 ‘입법’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치안정보의 불확정성·불명확성,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서 치안정보를 넘어선 ‘정책정보’ 개념 도입⁷ 등은 법률개정없이 해결이 불가능하고, 문재인 정부도 기본적으로 법률(「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 개혁의 큰 방향을 잡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바 없습니다. 수사권조정이나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을 했으나,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할 뿐인데 이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거나 그에 저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입법’ 방식은 제20대 국회에서는 실패했습니다.

⁷ ‘치안정보’의 불확정성,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법률상 개념이나, ‘정책정보’는 법률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경찰청의 직제를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비로소 언급하고 있어 경찰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상 ‘정책정보’에 관한 적법성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적절한 방향⁸을 잡길 바랄 뿐입니다.

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

현실적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개정입니다. 정보국 산하 조직의 역할을 바꿔버리고, 정보경찰 조직을 개편하면 됩니다.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든 말든,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물리적으로 줄이면, 정보활동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활동의 총량을 줄이는 “결과”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도, 이런 방식의 개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법개정과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개정 없이도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법개정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개정이 되어도 그것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행 경찰법 체계하에서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충분히 경찰개혁 특히 정보경찰 개혁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개정에 덧붙여서, 인사와 예산을 통해 정보경찰 조직의 쇄신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정보활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개정이나 인사, 예산을 통한 정보경찰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정보경찰 개혁이 안 되는 이유

정보경찰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정보경찰의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와대의 의지가 정보경찰에 의해 견인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⁸ 21대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정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방향설정을 법개정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의 정보활동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과 공유할 것인지, 공유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종합·분석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함께 고민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경찰의 활동 중단에 따른 단점도 정보경찰이 정리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시스템 하에서 청와대가 정보경찰을 끊어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정보경찰 스스로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정보의 독점공급·독점소비 관계가 지속되면서 정보경찰이 문재인 정부의 오장육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수요처의 결심 없이는 정보공급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니 청와대가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의 결심이 없으니 여당도 미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정보경찰의 개혁을 원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입니다. 원한다면, 이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럿 있었는데, 안하는 걸 보면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번		권고명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일	2018년 4월	소관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
I. 권고 취지 경찰은 그동안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정보수집의 대상은 누구이며, 수집된 정보는 어떤 검증을 거치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보경찰이 어떤 정보물을 작성하고, 어떤 판단과정을 거쳐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경찰이 작성한 존안자료를 활용하여 정권과 경찰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없는지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보경찰은 비밀리에 스스로와 정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통치를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구시대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경찰의 입장에서 정보경찰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고 일상적 갈등구조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수사구조개혁 등 일련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이 ‘경찰 공룡론’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회를 통한 감시나 시민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불필요한 오해는 불식시켜야 한다. 그것은 정보경찰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만으로 가능하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적 근거부터 명확하지 않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한 법률 근거는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밖에 없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이 같은 법률 규정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법률이 규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이 정보활동의 수권 규정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로 정보경찰은 정치적 반대자나 정치권력이 주목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찰을 정보활동이라며 강변해왔다. 또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정치·경제·사회·학원·문화·종교 등 각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이 수집한 각종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무릇 경찰의 활동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인권수호자로서 적극적인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국민적, 헌법적,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경찰 활동은 당연히 헌법정신에 따라, ‘법의 지배’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처럼 모호한 직무규정이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 보관 등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호한 규정을 경찰만능주의적 정보활동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경찰의 정보활동은 공개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경찰의 정보활동 분야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 주목하며, 경찰의 정보활동을 개혁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I. 권고 내용 1.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한다. 이러한 정보활동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① 관련법에 규정된 ‘치안정보’란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 축적, 분석, 활용 등의 근거가 되었던 만큼 폐기한다. 현행 ‘치안정보’ 개념은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한다. '공공안녕', '위험성', '예방', '대응'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외연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②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의 각 기능(생활안전, 수사, 사이버안전, 교통, 경비, 보안, 외사, 공공안녕 등)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에서만 수행한다.

③ 경찰의 각 기능별 정보활동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 감사를 받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를 받고 사후 공개시 시민감시기구의 통제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경찰은 헌법질서에 반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정보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한다.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에 정하지 않은 파견과 상시출입 등의 방법으로 하는 동향 파악, 사찰은 즉각 중단하며, 기구와 인력은 이에 맞게 대폭 축소한다.

①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671호) 제14조(정보국)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2호)는 즉각 폐지한다.

또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에 대한 정보경찰관의 상시 출입과 경찰직무와 무관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출입을 즉각 중단한다. 정보경찰관의 기관 출입은 법령이 규정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기관 등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같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활동은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는 정부 차원의 정책정보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의 이관·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진행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정책정보에 대한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 조정을 진행한다.

㉢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4호) 업무를 조정하여 경비 등 다른 부서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5호)는 정부 차원의 협의·조정을 통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② 현재 정보기능의 업무 중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대외협력과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는 경찰청의 다른 부서로 이관을 추진한다.

③ 경찰청 정보국은 그동안의 파행과 시민의 인권보장에 소홀하였다는 반성에 기초해 정보국의 명칭, 활동, 조직 등을 재편한다.

④ 현행 정보경찰에 대한 심층적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경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정보경찰 인력을 대폭 축소한다. 축소한 인력은 민생경찰분야에 재배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력 축소는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정보경찰의 인력감축은 새로운 국가정보체계의 구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경찰청은 정보경찰 인력의 축소를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되, 현장 경찰관들의 원활한 전환배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경찰의 정보활동은 개별 기능별 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규정에는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필요성이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이나 치안정보 또는 정책정보라는 이유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과 동향파악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점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중복 출입하면 안 된다.

③ 정보경찰이 출입이 금지된 기관을 출입하거나, 그동안 사찰 논란이나 정치개입 등의 우려를 야기해 온 무분별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 ④ 정보경찰은 개인이나 단체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사찰, 동향 파악 등의 정보활동을 어떤 경우에도 진행할 수 없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 상 직무수행 외 사찰 활동도 일체 중단한다.
- ⑤ 정보경찰은 물론,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종합·작성·배포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 ⑥ 정보경찰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하고 이를 조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⑦ 정보경찰은 다른 부서의 경찰관 등의 동향 파악, 사찰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⑧ 정보경찰의 ‘전무’ ‘부사장’ 등 직무와 무관한 허위 직함 사용을 금지한다.
- ⑨ 비공식적으로 ‘분실’ 또는 ‘별관’으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 독립청사 사용을 지양한다. 별관의 정보경찰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한다.

4.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① 경찰관이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공개하고,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안보 및 시민의 생명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정보수집 활동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② 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관한다. 다만, 정보축적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이 지나 보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정보물에 대한 접근 이력을 남기는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 ③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정보 이력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보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성,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④ 경찰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그 근거, 절차와 방식 및 통제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내·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금지한다.
- ⑤ 정보경찰은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발제 2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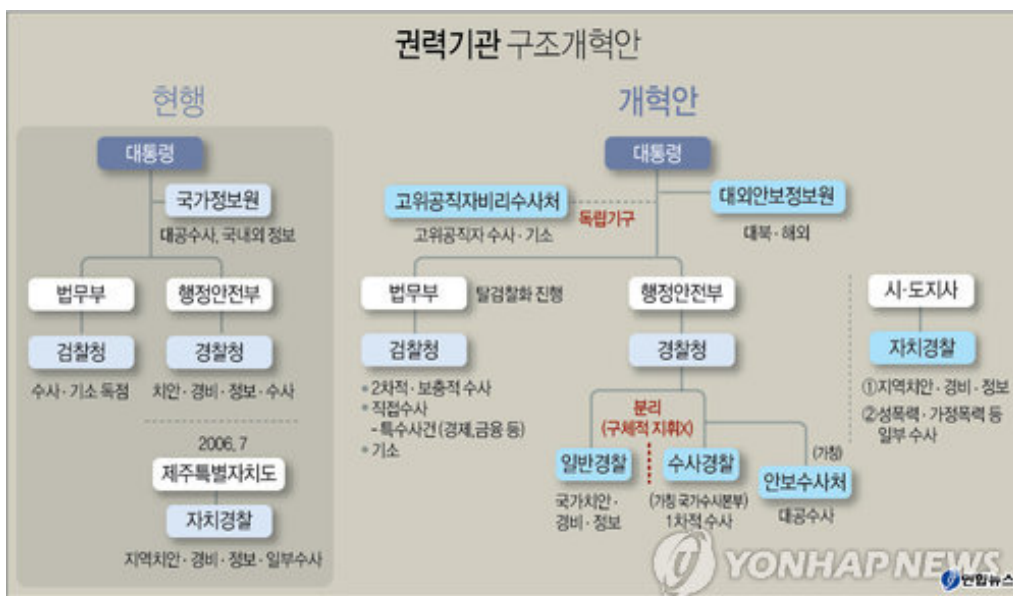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1.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2018. 1. 청와대는 검·경·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그 골자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한 안보수사처 신설 등”이었음.

2020. 7. 현재, 공수처는 설치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아직 공수처는 설치되지 못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는 진행중이거나 논의중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은 오리무중인 상태.

보안경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안보수사처’의 신설임.



2. 경찰의 보안(안보)수사 개혁과제: 대공수사권 이관을 중심으로

가. 이른바 ‘보안수사’의 추세와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과 보안(안보)수사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해 검찰과 경찰을 지원하고 있음.

‘대공수사’라는 개념의 모호성, 「국가보안법」의 존재 등이 원인이 되어 ‘예방경찰’의 형태로 사회 전영역의 사상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문제.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7조(찬양·고무 등)는 최근(2018. 3. 29., 2016헌바361) 까지 8차례에 걸쳐 위헌심판이 진행됨.

(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추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건접수(신수)		186	207	203	289	306	245	167	120	144	305
처분	기소	76	91	110	197	83	73	35	27	26	15
	불기소	62	62	82	25	134	80	97	84	243	278
	기타	11	18	18	38	53	30	10	7	8	13
	합계	149	171	210	260	270	183	142	118	277	306

출처 :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 2020. 1. 30.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이송

※ 고소·고발·재심 포함

박근혜 정부(2013-2017)로 범위를 좁혀 기관별 입건·송치현황, 입건·송치현황, 죄명별 현황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⁹

기관별 입건, 송치 현황

	입건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기타 (군검찰 등 이송)
2013년	129	26	96	1	6
2014년	57	5	50		2
2015년	79	26	51		2
2016년	43	9	31		3
2017년	42		41		1

입건·처리현황

	인원수 [구속]	기소	불기소 [합계-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 -공소보류-기소중지등]	이송	미제
2013년	129[38]	70	4-1-1-0-0-0-2	4	51
2014년	57 [7]	34	6-0-4-0-0-1-1	4	13
2015년	79 [26]	50	17-4-6-0-0-2-5	0	12
2016년	43 [21]	27	8-1-5-1-0-0-1	0	8
2017년	42 [7]	14	13-0-11-0-0-0-2	0	15

※ 기소 : 구공판 기소(약식기소 없음)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공소보류, 이송 포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8년 7월까지 12명 입건, 2명 기소, 11월말까지 4건, 5명 기소(서울중앙지검에서 2건 3명,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각 1건 당 1명씩 기소) / 2015년에 1심 선고 피고인 전체 58명 중 무죄 11명, 실형 12명 2016년에 56명 중에 무죄 5명, 실형 2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66명 중에서 무죄 19명 실형 10명으로 무죄선고율이 증가하고 실형선고율은 감소함.

⁹ <기관별 입건, 송치 현황>, <입건·처리현황>, <죄명별 현황자료>는 아래의 자료 등을 재구성함.

e-나라지표의 범죄유형별公安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진선미 의원실 2017.10.11.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사범 10명중 7명은 경찰 검거>

출처:

<https://www.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58213&searchNoSeq=2017101158213>

요컨대, 「국가보안법」 등 보안수사는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세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제외한 3대 중대사건(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죄명별 현황

년도	합계 [구속]	반국가단체 구성 등	목적 수행	간첩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 탈출 등
2013	129 [38]	0	2[2]	3 [3]	4[2]	15 [11]
2014	57[7]	0	3[2]	2 [1]	4[0]	4[1]
2015	79 [26]	1[0]	3[3]	0	2[0]	20[9]
2016	43 [21]	1[0]	0	2 [2]	0	10[6]
2017	42[7]	0	1[0]	0	1[0]	11[4]

년도	합계 [구속]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 직무유기	무고 날조	기타
2013	129 [38]		102[18]	3[2]	0	0	0	0	0
2014	57[7]		40[1]	4[2]	0	0	0	0	0
2015	79 [26]	14[6]	38 [7]	1[1]	0	0	0	0	0
2016	43 [21]	7 [3]	18 [8]	3[0]	2 [2]	0	0	0	0
2017	42[7]	0	26 [2]	1[0]	2 [1]	0	0	0	0

나. 보안수사와 경찰개혁

(1) 현행 경찰의 보안수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 경찰의 보안관련 부서에서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맡고 있음.

그러나, 보안범죄 정보가 아닌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경찰은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 대책업무”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맡고 있는데, 경찰이 신변보호 업무 외 “주민 관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는 인정하기 어려움(관리라는 명목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사찰 또는 감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경찰청 보안국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경찰의 직무범위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① 보안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정 국민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② 경찰의 보안업무범위에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질수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북한 이탈 주민관리”업무를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요청하더라도 보안부서가 아닌 생활안전국이나 경비국 등 타부서에서 맡도록 해야 함, ③ 또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 보안부서가 맡고 있는 “북한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중단시켜야 함.

(2)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대응

현재 경찰도 대공수사와 그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 양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을 압도한다고 평가되나,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공수사의 주도권은 국가정보원이 행사하고 있음.

앞으로 있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① 국가정보원 요원 흡수시 직급 조정, ② 수사인력 전문화 등 과제가 대두되고, 이에 경찰은 2018. 1. 안보·범죄심리, 외국어요원 등 40명에 이르는 ‘안보수사관 경력채용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3) 안보수사청 신설은 필요한가

2018. 1. 발표된 청와대 구상대로 안보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① 기존 보안수사대 등 감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② 오히려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비대화된 조직이 탄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생각건대, ① ‘분리원칙’이 극명하게 적용되는 것은 국가정보원과 같은 비밀정보기관의 경우로서, ② 경찰로 안보수사권이 이관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임.

다만, ①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역량을 온전히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보안국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② 비대화를 막기 위해(남북관계

변화로 인한 안보수사 수요 등 고려) 현재 보안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편성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함.

한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협의체’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정보경찰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을 대신해 정보경찰이 그 기능을 대신했고,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를 효율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는 경찰 본연의 정보수집의 영역이 아닌 이른바 존안정보의 영역일 것이고, 존안정보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취합하여 분석,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

정책정보의 영역으로 확대하더라도, 이는 경찰이 수집해야할 영역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2차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고, 인사검증, 복무점검 역시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아닌 행정기관, 즉 인사혁신처, 감사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이 실시하면 충분함

요컨대, 정보경찰은 폐지하여야 하고(경찰청 정보국 해편), 필요한 기능은 행정 각 부처 및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 배분하고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론 1

토론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교수

□ 들어가며

- 경찰개혁의 중요한 꼭지 중의 하나인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발표에 토론으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향후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의 개혁이 반영되어야 할 점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발표문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 두 개의 발표문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국가권력기구의 민주적 재편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의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에 대하여 과거의 행태를 분석하거나 그 뿌리를 찾는 작업이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체계가 독재, 군사쿠데타 등으로 왜곡되어 오면서 일반적 인식 속에서 이미 국가기능의 정상적인 한 요소인 것처럼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여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의 다음 지적은 그래서 정보경찰과 보안경찰 공히 중요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도개선논의를 함에 있어 수십 년 전의 잘못(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해서는 적절한 개선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미 해결되었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소진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바로 이런 점이 그동안 정보경찰 개혁의 진전을 막는 기제로 활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 결국 대안은 ‘정상적인 국가체제로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장유식 변호사께서 보안경찰의 문제를 청와대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2018. 1. 14.)에서 시작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하에서는 제가 발표문을 읽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점을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정보경찰’ 개혁에 관하여」에 대하여

- 양홍석 변호사께서는 정보경찰의 문제점으로 ① 지나치게 권력지향적 조직과 활동, ② 정책결정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③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 부재, ④ 활동방식의 비민주성 등을 지적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 2018. 4. 27.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권고안 25번, 이하 “권고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선의 방향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안정보 개념을 폐기하고 ‘정보’를 별도의 기능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즉, 정보경찰의 존립이유는 없다]고 보면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정보경찰의 기능과 임무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대체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론의 관점에서 발표 내용 중에서 앞으로의 정보경찰 개혁에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몇 가지 점을 부연하면서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첫째, “정보경찰의 ‘정보활동’과 비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그리고 비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을 나누어보아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여기에서 더 구체화시켜 보면, 비정보경찰의 ‘정보활동’도 다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정보활동과 직무관련성이 떨어지는 ‘일반정보활동’도 있습니다.¹⁰ 이 일반정보활동은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의 토대가 되고 경찰의 본래적인 직무활동과도 거리가 있는 정보도 다양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의 폐지를 전제할 경우, 그 기능은 다시 다양한 경찰조직에 분산되어 ‘일반정보활동’의 형태로 수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이 점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둘째, 발표문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의 치안활동을 통제하는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참조).”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와

¹⁰ 이에 관하여는 오병두,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민주법학 제30호(2006. 3), 197쪽 이하.

비교하면, 경찰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각주 5)) 나아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 중에서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 이 지적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경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정보경찰의 경우에 더욱 나쁜 상황일 것입니다.¹¹ 경찰 내에서조차 정보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보경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 자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현재 민주적 통제방안의 하나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되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통제로서 경찰위원회의 감독 기능 이외에도 직무감독 기능으로서 행정안전부나 국무조정실의 기능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셋째, 경찰정보의 독점적 공급과 수요, 그리고 그로 인한 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정보경찰, 정보국의 존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기구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해왔다는” 사실¹²에 비추어 볼 때, 정보의 수집, 생산, 분석을 위한 행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정상적인 국가체제로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보경찰이 독점적으로 정리한 ‘자료’와 ‘의견’을 청와대에서 직접 소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적 국가의 의사결정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조직법적 차원에서 대안을 구상한다면 어떠한 방식과 체계가 필요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다음으로, 정보를 활용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¹³ 저는 그 전제로서 정보수요자에 대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요청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적어도 의회에서 사전·사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¹⁴ 의회에 의한

¹¹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문제가 상급기관으로 행정안전부가 직무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되며, 더 소급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의 시민에 대한 압제적 통치방식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

¹² 오병두, “정보경찰 개혁방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68호(2018. 11), 287쪽.

¹³ 관련하여,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시스템에 관하여는 이계수, “의회에 의한 비밀정보기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24호(2003), 247쪽 이하.

¹⁴ 오병두, “정보경찰 개혁방안”, 283쪽 이하.

정보기능, 특히 경찰의 정보기능 통제가 충분히 실효적일지 그리고 실효적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발표자의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십시오.

□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 이 발표문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 폐지되면서 독점되고 강화되는 경찰의 보안수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안경찰의 축소”, 즉 보안수사와 무관한 광범한 정보수집활동의 폐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발표문은 경찰의 보안수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①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이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② 경찰청 보안국이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2조)은 경찰의 직무범위가 아니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서 신설한다고 발표한 「안보수사청」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국가수사청의 설치를 전제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편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역시 대체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발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발표문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협약의체’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운영주체, 참여자, 논의방식 등이 중요할 듯하며, 향후 보안경찰 개편과정에서 잘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둘째, 정보경찰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대신해 정보경찰이 그 기능을 대신”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경찰 본연의 정보수집의 영역이 아닌 이른바 존안정보의 영역일 것”으로, 그 결론에서는 “정보경찰은 폐지하여야 하고(경찰청 정보국 해편), 필요한 기능은 행정 각 부처 및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 배분하고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장은 ‘정상적인 국가체제로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취합하여 분석,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일차적인 정보[첩보]의 수집일 텐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나오며

- 토론회의 제목인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는 현재 시점에서 이른바 “권력기구 개편”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문제는 ‘정상적인 국가체제로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안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해봅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2

정보경찰 폐지없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 정보경찰 폐지의 필요성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 시민단체, 국가기관, 정치인 사찰을 통한 정치 개입 등 과거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드러난 바 있음.

이것이 일부 정보경찰만의 문제라면 권한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개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정보경찰의 과거 악행은 ‘위험 예방과 범죄 수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 외의 민간 사찰을 자신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보경찰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현재 정보경찰의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① 치안정보 수집, ② 정책정보 수집, ③ 집회 관리, ④ 신원조사·인사검증 등의 업무 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업무들은 경찰의 업무가 아니거나 혹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들임.

- ‘정책정보’의 경우 1차적으로는 해당 정책과 관련된 부처나 기관을 통해 보고를 받으면 됨. 교차 확인을 위해 별도의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실 등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를 둘 수 있을 것임.
- ‘신원조사·인사검증’ 등의 업무 역시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집회 관리’ 업무 역시 경비 등 경찰청 내 다른 부서로 이관이 가능함.

‘치안정보’의 경우 그 개념이 모호하여 민간인 사찰 등 과도한 정보수집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음. 이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 개념 역시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 문제와 별개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을 굳이 정보경찰이 수행해야 하는지 의문임.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경찰청 내 다른 부서 역시 범죄 수사, 보안, 사이버 안전 등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실제 정보경찰의 주 업무도 위험 예방이나 범죄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책정보, 대외협력, 인사검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한 언론보도¹⁵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 업무 중 정책자료 작성이 **22.5%**, 범죄정보 작성은 **1.3%**에 불과했다고 함.

2. 문재인 정부는 경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조차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경찰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언급하고 있지만 정보경찰의 폐지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각 정당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바꿔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되, 조직은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음. 정책정보나 인사검증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

정부와 여당이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 정보경찰을 존속시킨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의 위험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며 향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3. 대안

정책정보나 인사검증 등의 업무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고 집회 관리 등은 경찰청 내 다른 부서로 이관하며, 위험 예방 및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등은 경찰청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경찰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¹⁵ KBS, ‘범죄 첩보’ 1.3% 불과...“정보국 폐지” 추진에 靑 ‘반대’, 왜?. 2019.3.3

의문임. 따라서 정보경찰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보경찰의 폐지없이 경찰 개혁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20대 국회에서 소병훈,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서처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음.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전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경찰의 행태가 통제될지 의문임.

「경찰법」 제3조 제7호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에 경찰과 경찰관의 임무로 규정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내용이 겹친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도 찾기 어려움. 오히려 이 같은 개정은 정보경찰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줄 위험이 있음. 따라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은 아예 삭제되어야 함.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권한을 부여하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수집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함.¹⁶

¹⁶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https://act.jinbo.net/wp/41833/>

삼성 노조파괴 정보경찰의 인권침해¹⁷

정희섭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사무장

1.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조합원 486명이 2013년 7월 11일 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7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로 창립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에 2013년 7월~8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전자서비스는 응답하지 않았고 한국경영자총연맹(이하 경총이라 함)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 위임에 따라 경총은 약 한 달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용한 교섭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013년 9월부터는 경총이 전국에 있는 개별 협력사들로부터 교섭권 및 교섭체결 권한을 위임받는 형식을 취하며 개별 협력사들을 대리하는 경총과 노조가 교섭을 실시하는 개별교섭의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했다. 실질적으로 삼성 인사팀(인사지원그룹, 삼성전자서비스) 사측 교섭을 주도하는 형태였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법파견 소지가 매우 많다는 고용노동부에 입장을 뒤집는 2013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수사감독의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삼성은 9월 28일~10월 22일 조합원이 있는 협력사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표적감사를 진행하였다.

¹⁷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호석열사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이 과정에 2013년 10월 31일 천안센터 최종범 조합원은 전국에 있는 부당표적감사를 막기 위해 자결했다.

지회는 투쟁위원회를 구성,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천안 협력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2013년 12월 3일부터 삼성전자 본사 서초사옥 앞에서 최종범열사 자살 사건에 대한 사과, 협력사소속 삼성서비스 노동자 ‘임금체계 변경, 리스차량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했고 2013년 12월 20일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간의 합의가 도출되어 노조는 농성을 해체했다. 이후 노조는 단체협약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14년 1월 경 부산,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서비스는 신속노조와해대응팀을 구성하여 조합원에 많은 협력업체에 대해 기획폐업 및 노조 소진전략, 그린화 방안 등 노조와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 당시 노조는 교섭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 서초사옥 상경 노숙투쟁을 1~3차까지 진행했다.

1차 투쟁을 마치고 양산으로 내려간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이 자결을 했다. 당시 35살이었던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 월급은 40만 원이었다.

2. 염호석열사, 삼성의 합의시도와 경찰의 공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은 전면파업과 상경투쟁 노조 활동 중 2014년 5월 12~14일 서초사옥 앞 상경 투쟁에 참여한 뒤 양산으로 내려와 5월 15일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양산센터 조합원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 되었고 2014년 5월 17일 13시경 강원도 강릉에서 유서 4장과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양산센터 조합원은 5월 15일 18시경 양산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실종신고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하여 신고처리를 못하고 있던 중 5월 16일 양산서로부터 실종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받고 5월 16일 10시 40분경 실종신고했다.

양산서 정보보안과 000경사는 5월 16일 오전 출근하여 실종 발생보고서를 토대로 정보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경남청에 보고했다. 000경사는 실종신고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협력업체 사장,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외근팀장,

삼성전자서비스 북부산 지점장(원청), 삼성전자서비스 북부산 차장(원청) 등 연락하여 경찰의 실종신고 처리상황 및 시신발견 내용 등을 전달했다.

삼성 내부 보고문건에 의하면 사건 초기 양산센터로 보고받은 내용에 실종 당시 염호석열사의 집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CCTV확인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양산서 형사과의 실종 수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정보과 000경사, 000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료 및 정보내용이 경찰이 삼성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염호석열사 자택으로 경찰과 함께 가서 문을 열고 집 내부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하였으며, 당시 양산센터 000 SV(원청관리자)도 염호석열사 자택에 함께 갔던 000이 CCTV 영상을 제공 받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양산센터에서는 주요시간대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삼성내부로 문건을 송부하였는데 이 보고문건 상 주요 상황정보는 경찰과 진행상황에 대해 상호연락을 주고받으며 작성했다.

(삼성 내부 보고문건)

SVC양산센터 염호석CSP 사망 관련보고 8)

5. 16 17:00 경찰 CCTV 확인결과 보고

5. 17 22:00 000B 정보계장에게 장례위로금 3~4억에 합의토록 가족과 조율하라고 지시

22:11 양산협력사 사장, 팀장, SV, 경찰 도움받아 시신안치실 주변 입장

22:30 협력사 사장, 15분간 만나 (...)

염호석 父, 서울의료원 가겠다 (...)

22:35 정보과장에게 부친이 술이 취한 상태니 시간을 지연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22:50 시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이동중

23:35 금속노조 입장표명,

5.18. 14:00 긴급 임실장회의에서 대책논의 예정, 서비스지회 쟁대위 긴급소집

당시 양산서 정보과에서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승리하는 날 그 때 장례를 치러달라는 염호석열사의 유서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노조에게 관련 내용은 전달하지 않은 채 시신이 발견된 사실 등만 전하고 강릉으로 출발토록 했다.

삼성 경영진은 비공개 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이를 추진하기로 하던 중 염호석열사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장례절차를 계기로 한 열사 투쟁으로 인해 5월 총력 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삼성 서초사옥 앞 철야 농성, 연대 농성 등 노조가 더욱 강경하게 투쟁에 나서기 때문에 삼성이 노조파괴로 계획한 노조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자 노조장을 무산시켜 장례투쟁의 동력을 감쇄시키기 위해 정보경찰 김00에게 도움을 요청함.

이에 정보경찰 김00은 2014년 5월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21층 클럽라운지에서 염호석열사의 부친을 만나 그에게 본인 신분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설득하고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제시하여 염호석열사의 부친으로 하여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의사를 번복하게 했다.

정보경찰 김00은 같은 달 19일 부산으로 내려가 삼성전자서비스 000상무로부터 전달받은 나머지 합의금을 염호석열사 부친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0일 밀양화장장에서 염호석열사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염호석열사의 장례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점검했다.

(삼성 내부 보고문건)

SVC양산센터 염호석CSP 사망 관련보고 42)

5.18 09:50 염호석 부친의 지인과 부친이 유선 연락

염호석 부친의 지인이 절대 노조에 위임장 작성 금지 및 협력사와 합의하라고 함

10:00 000,000,000 르네상스호텔 도착

000가 차량 뒤를 따르며 노조 차단

10:10 호텔 숙소(21층 클럽라운지) 협의 진행

10:20 합의금 일부(1억)가지고 전자 및 서비스 인력 출발

전자 000변호사, 서비스 인사팀장

10:30 조합원들은 부친 행방 파악 못함

10:40 염호석 부친의 지인(000 정보관 동행) 서울 도착

11:00 조합원들에게 노출된 000 팀장 차는 르네상스호텔에서 이동시킴

- 합의진행에 노조의 방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조치

11:05 강남서 정보관과 협의하여 장례식장 동향 공유

11:30 000, 000, 여자1명 장례식장 외부로 나감

11:50 강남서 정보관으로부터 동향에 대한 정보입수

조합원 35명 집결 (1층 출입구 10명, 도로 4명, 순찰2명)

병원도 장례진행에 대한 부담으로 상설상조업체 권유

12:10 유족(부친)과 장례에 대한 합의 종료

17:15 유가족의 운구차량 요청이 있어 중형버스 수배

- 모친은 합의금액 확인, 지인 및 정보관은 호텔 퇴실

- 모친은 000 정보관과 함께 운구차량으로 이동예정, 하행중
휴게소에서 부친과 만날 예정

17:35 부친 동생과 지인이 장례식장 복귀

18:30 장례식장 정문 출입구 쪽에 조합원 60명이 진입 차단

경찰관 2명이 상황대기 중

가족장을 위한 시신운구작전

10:00경 르네상스호텔에서 염호석열사 부친과 김00 노정팀장이 만나 6억원에 합의가 성사된 이후, 11:45경 서울청 경비1과에서는 휴무로 지정되어 있던 51, 52, 806, 129, 189, 199중대 등 6개 부대가 ‘부대대기’로 변경하는 경력조정지시를 하달했고, 이중 189, 199중대 2개 부대와 34경찰기동대가 13:00~14:30경 서울의료원 인근 배치되어 대기했다.

경력 진입과 동시에 ‘방패로 막어. 방패로 막어 일단, 방패로 막어’, ‘대열정비’, ‘일자로 밀어’ 등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미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병력을 운용한 것이 확인되며 단 한차례의 경고 방송이나 출동사유에 대한 안내방송이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9:07경 경비과장이 장례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처음으로 했다.

19시 병력이 진입하여 19:55경 운구차가 서울의료원을 빠져나는 55분의 진압과정에서 사용된 캡사이신의 양은 6.18L이다. 운구차가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을 장례식장 정문 방향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특히 운구차량이 주차된 공간에서 조합원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날 장례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25명이 체포되어 1명이 구속기소되었고 2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직원 000의 진술에 따르면 강남서 정보보안과 기획정보팀 000경위가 발인 1~2시간 전에 자신에게 잠깐 나와 달라고 하여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 시신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물어 본인이 길을 설명해 준 바가 있으며, 그 정보관이 집회하는 사람들을 몰아낼 테니 발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발인실 문을 열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뇌물수수

2014년 5월 22일 000 정보계장은 000이 전화를 걸어오자 경남 양산시 동면 소재 현대오일뱅크 석산주유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고, 000이 주유소에 도착하자 주유소 뒤편으로 난 산길을 통해 인적이 드문 공터로 인도하여 현금 1천만원 건네받았다.

000 정보계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경남 양산 유산동 소재 엘지패션 생산 공장에 80만 원가량에 판매되는 양복 14벌을 의뢰해 000 정보과장을 포함한 양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 14명과 맞춰 입고 약 300만 원을 000 (주)양산패션 대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경남 양산 물금읍 소재 진서방이라는 고기집에서 회식을 하며 2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서울중앙지법 2018고합1262)에서 000 정보계장은 1천만원 수수에 대해 인정하면서, 양복과 회식비용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 본인과 000 정보과장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씩 나눠가졌다 주장하지만, 000정보과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3. 정보경찰의 권력과 친기업적 공무집행

염호석열사 시신탈취 사건과 그 합의 과정에 대해 정보경찰관은 노사 간의 분쟁이나 갈등국면에서 협의, 중재, 조정하는 것이 정보경찰의 중요한 업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 중재, 조정 등은 양측의 참여한 대립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혹은 어떠한 노조든지 노조는 강성이고 투쟁력이 높으며 ‘노조장 = 변수’로 인식하여 이에 돌발상황 대비, 치안부담으로의 보편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정보경찰집단이 노사를 중립적으로 중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사건에 개입한 경찰관들의 상황인식과 판단, 공무집행은 협의, 조정, 중재로 보기에 중립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토론문

최종윤 경찰청 정보1과(경정)

I 정보경찰 개혁 추진사항

정치관여 금지 제도화	제도적 통제방안 마련	정보경찰 조직·사무 재설계	정보활동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정당 등 광범위한 출입 ↓ 정치 개입·사찰 논란	사무감사 예외· 경찰위원회 형식적 보고 ↓ 내·외부 감시·통제장치 미흡	과거의 조직구성· 업무방식 답습 ↓ 정보분실 운영 등 폐쇄적 문화	정보활동의 경계와 법적 근거 모호 ↓ 자의적 정보활동, 사찰·정치개입 논란
↓	↓	↓	↓
▶ 정보활동 규칙 제정, 활동 기준·제재 마련 ▶ 국회 등 상시출입 중단, 국회협력관 폐지	▶ 준법지원계 신설 → 정보활동 적법성 확인·감독 ▶ 정기 사무감사 수감 ▶ 경찰청 보고 실질화	▶ 인력 11.1% 감축 (채증업무 이관, 외근 정보관 현장 재배치 등) ▶ 정보분실 폐쇄 ▶ 경직법 개정 후 직제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정치 관여 시 처벌 규정 마련 (경공법 개정 추진) ▶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 명확화 (경직법 개정 추진)

II 발제문에 대한 입장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 ▶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정치관여 및 불법사찰 원천 금지 △규칙 위반시 제재수단 마련 △부당지시 금지·거부 제도화)
- ▶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규정 마련' (경공법)· '정보활동 범위 명확화'(경직법) 등 법 개정을 추진
- ▶ 준법지원계 신설 등 제도적 통제방안 마련 / 국회협력관 폐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부재?



- ▶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규칙 위반시 제재수단 마련 등)
- ▶ 경찰청 정보국 內 '준법지원계'를 신설, 현장 정보활동 모니터링
- ▶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 수감, 경찰위원회 보고 실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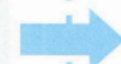
정보경찰의
비밀주의?



- ▶ '신분공개+목적설명+임의적 방법'으로 정보 수집(정보경찰 활동규칙)
- 제5조 제3항 :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 사용 금지
- 제6조 제1항 : 정보관의 신분·목적은 밝히도록 규정

II 발제문에 대한 입장

'공공안녕'
여전히
불명확한
개념이다?



- ▶ 공공의 안녕은 법학·경찰학에서 체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이고, 국내(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20여개 법률), 해외(△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도 통용되고 있음
- ▶ 단순 공공안녕이 아닌,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인 만큼 위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보활동의 범위를 한계 지움

과도한
영향력 행사?



정책정보·
신원조사·
인사검증(지원업무)
이관?

- ▶ 국정원이 국내정보 업무를 중단한다고 해서 경찰 정보기능으로 인력·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정보활동에는 변화가 없음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정보경찰이 아닌, 보안경찰 영역임
- ▶ 경찰 정책정보는 모든 영역이 아닌 '국민안전·평온'과 '공공안녕 위험 예방' 등과 관련된 정책·현안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진행
- ▶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국가정보체계 재편과 연계되어 검토해야 함

II 발제문에 대한 입장

정보경찰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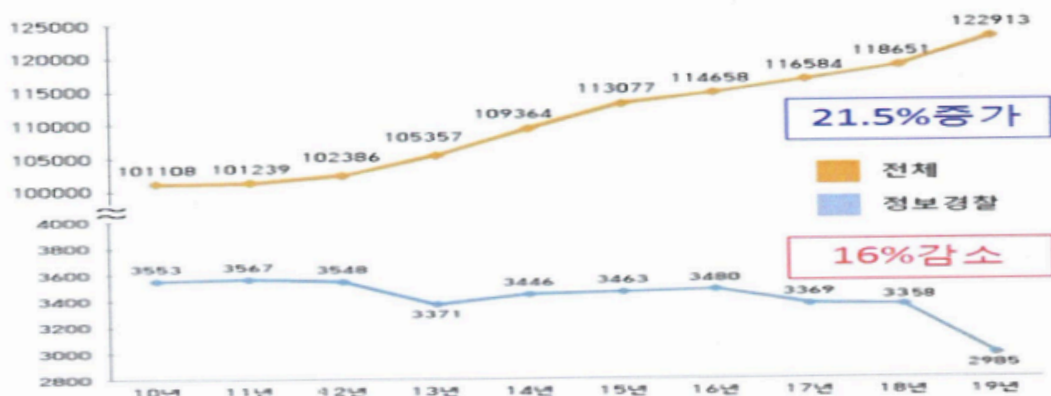
- ▶ 범죄·테러·재난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 탐지'하고 '알람 기능'을 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은 필요함
- ▶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정보경찰 폐지 시 위험에 대한 예방·대응력이 약화 우려
 - ※ 국가안보·국민안전·사회질서·공공안녕 유지를 위한 정보활동 체계·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국가 전체의 필요정보 총량'을 고려해야 함
- ▶ 대다수 외국 경찰도 공공위험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기능을 운영 중 → 9.11. 테러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경찰 정보활동은
각 기능별
정보활동으로
족하다?

- ▶ 집행부서 시각에서만 정보를 수집·분석 → 정보의 객관성이 저하, 파편화된 정보를 종합하지 못해 경찰 전체 정보역량 약화 우려
 - ※ <9.11. 테러>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파편화된 정보로 인해 초기대응 실패
- ▶ 경비경찰이 상황정보까지 전담 시, 정보경찰의 완충적 역할 (대화경찰 등 갈등 해소 역할)이 사라져 집회시위 대응이 경직될 우려도 있음

II 발제문에 대한 입장

● 정보경찰 정원 감축 경찰개혁위 권고('18.4월)에 따라 정원 감축



- [지난 10년 대비] 지난 10년간 전체 경찰관 정원은 21.5% 증가한 반면, 정보경찰 정원은 16% 감소(3,553명 → 2,985명)
- [18년 대비] △채증·소음 업무 및 인력 이관 △외근 정보관 민생 치안 분야 재배치 등 정보경찰 정원 11.1% 감소(3,358명 → 2,985명)

III

향후 계획

- **정치관여 時 형사처벌 명문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토록 ‘정치관여 時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20대 국회 未통과)」 입법 추진

- 국가공무원법보다 포괄적인 ‘정치관여 금지’ 조항(국정원법·군형법 원용)을 신설하고, 형량도 ‘기존 3년 → 5년’으로 상향

경찰공무원법(개정안)

- ▶ 제18조의2(신설) : △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의 지원·방해 △ 직위 이용지시·반대 및 찬양·비방 의견 유포 △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및 공공기관 자금의 이용 △ 선거운동·대책회의 관여 행위 등 금지
- ▶ 제31조(개정) : 정치관여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로 처벌

-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 명확화** ‘치안정보’의 개념·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20대 국회 未통과)」 입법 추진 예정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

- ▶ 제2조 제4호(개정) : (현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개정안)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공공안녕, 국내 입법례> ‘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20여개 법률에서 통용
 - <공공안녕, 해외 입법례>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도 경찰법 등 법률에 ‘공공의 안녕’을 명시
- ▶ 제8조의2(수권규정 신설) : ①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처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직법 개정 이후 정보활동의 구체적 범위 등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그 내용에 맞춰 직제 등도 개정 계획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토론회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발행일 2020.7.29.
발행처 경찰개혁네트워크
담당 참여연대 최재혁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